

비밀유지협약서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주식회사 피엔알(이하 "회사"라 함)이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회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자"라 함)에게 제공하거나 입찰자가 취득하는 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은 입찰자가 본 협약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전자서명 포함)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은 입찰자가 입찰 참가 철회 등의 사유로 해당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 3 조 (비밀정보 보호)

- ① 입찰자는 입찰대상 제품에 대한 도면 등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함)를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해당 입찰 참가 및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 제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비밀정보에는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와 제품의 설계방법, 사양,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 정보, 기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영업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② 입찰자는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 ③ 입찰자는 해당 입찰 참가 및 수행 관련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소속 임직원, 관련 하청업체 및 그 소속 임직원(관련 하청업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하 총칭하여 "관련자"라 함)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관련자가 본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관련자로부터 본 협약에 준하는 영업비밀유지약정서를 징구해야 한다.
- ④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는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입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간주한다.

제 4 조 (지적재산권)

①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본 협약이 입찰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비밀정보의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입찰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입찰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대한 개량 기타 지식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이하 총칭하여“개량지적재산권 등”이라 함)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입찰자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개량지적재산권 등을 형성하는 경우 그 개량지적재산권 등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입찰자는 비밀정보 및 이를 활용하여 형성한 개량지적재산권 등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제 3자(해당 제 3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posco
PNR